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참조2)

2011. 2. 15(화) 10:00

제176회 임시회
규칙 개정안 검토 보고서

《검 토 안 건》

-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창훈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검토보고

의안 번호	2437
----------	------

발의년월일 : 2011. 2 .

발 의 자 : 김순례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현행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은 구청사에 시공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2004. 2. 18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신청사 입주 후 새로운 전자시스템 적용에 시간적 공간적 문제점이 발견되어
- 전자투표시간 제한규정을 의장이 회의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투표를 실시함은 물론 효율적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장의 회의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20초로 제한된 전자투표시간 제한규정을 삭제(안 제5조)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를 삭제하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③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 ④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
- ⑤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 표 결 과 집 계 표

날짜 : 년 월 일

- 안 건 명 :
- 재적의원 : 명
- 출석의원 : 명
- 개표결과 : (가결), (부결)
 - 찬성 : 명
 - 반대 : 명
 - 기권 : 명

성남시의회 의장 ①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투표방법) ①~②(생략) ③ <u>투표는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른다.</u> ④ <u>투표시간 내 찬성, 반대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u> ⑤ <u>투표시간 내 찬성, 반대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된다.</u> 제5조(투표시간)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한다. [별표 1] 개표결과집계표 날짜 : 년 월 일 ○ 안 건 명 : ○ 재적의원 : 명 ○ 재석의원 : 명 ○ 투표시작시간 : 시 분 초 ○ 투표종료시간 : 시 분 초 ○ 개표결과 : (가결), (부결) · 찬성 : 명 · 반대 : 명 · 기권 : 명 성남시의회의장 ㉠	제4조(투표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u>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u> ④ <u>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u> ⑤ <u>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된다.</u> (삭제) [별표 1] 개표결과집계표 날짜 : 년 월 일 ○ 안 건 명 : ○ 재적의원 : 명 ○ 출석의원 : 명 ○ 개표결과 : (가결), (부결) · 찬성 : 명 · 반대 : 명 · 기권 : 명 성남시의회의장 ㉠

□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20초로 제한된 전자투표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의장의 회의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 규칙을 개정함에 법규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1. 전자투표 규칙 등 제정 운영 현황

의 회 명	주 요 내 용		비 고
	규칙 등 제정 여부	전자투표 시행 여부	
수 원 시	×	○	
안 양 시	×	×	
용 인 시	×	×	
부 천 시	×	×	
고 양 시	×	×	
포 향 시	×	×	
청 주 시	×	×	
경 기 도	×	○	
서 울 시	×	○	
울 산 시	○	○	

2. 타 자치단체 관련규정 발췌

【울산광역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규정된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안건의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방법) ①의장의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회사무처 직원이 조작한다.

②투표참석 의원은 회의진행에 따라 전자장치 기기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③투표시작 선포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④투표는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⑤투표시간내 찬성, 반대 어느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이 된다.

⑥투표시간내 찬성, 반대를 누른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소버튼을 누르고, 찬성, 반대, 기권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

제4조 (투표시간) 전자투표 시간은 1분 이내로 실시한다.

제5조 (투표결과 및 선포) 투표가 종료되고 별표 1의 개표결과 집계표가 출력되면, 의장이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선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